

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20.09.21. 개정 2023.07.14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“ 본 대학” 이라 한다)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 및 범위)

- ① “계약학과”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을 위해 본 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.
- ② “채용조건형”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“재교육형”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, 직무능력향상, 전직교육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“혼합형”이라 함은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이 혼합된 방식으로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, 학생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부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산업체 등에서 채용을 확정하여 재교육형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3.07.14.>
- ⑤ “중소기업 재교육형”이라 함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중소기업청에서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3.07.14.>
- ⑥ 이 규정에 따라 본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(이하 “산업체 등” 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7.14.>
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
 2.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이상의 사업체
 3.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 4. 군부대(장교,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)
 5.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(이하 “사업주 단체”라 한다)

제2장 설치 및 운영

제3조 (명칭 및 정원) 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은 별표1에 의한다.

제4조 (설치요건 및 학위과정)

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7.14.>

1. 채용조건형
2. 재교육형
3. 혼합형
4. 중소기업재교육형

② 계약학과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둔다.

제5조 (설치권역 및 계약 체결)

①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행정구역(시·도 단위) 내 또는 본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인 경우로 한다. 다만,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대학과 동일한 "권역"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함을 명시한 경우, "권역 내"의 계약으로 본다.

②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, 운영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계약학과의 명칭
2.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
3. 설치·운영기간에 관한 사항
4. 등록금과 정부지원금, 참여기업 및 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
5.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

제6조 (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·운영)

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.
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,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(채용예정자를 포함)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본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 3장 학생선발

제7조 (입학자격)

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7.14.>

1. 고숙련일학습 병행제 계약학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은 도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
2. 채용조건형, 재교육형 및 혼합형 계약학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<개정 2023.07.14.>
3. 중소기업 재교육형 계약학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에 의하여

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

- ② 제1항의 제3호에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기업부장관이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 (학생의 선발) 학생의 선발은 정원의 특별전형은 원칙으로 하며,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의 전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9조 (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)

- ① 계약학과에 입학(재입학 포함)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.
 -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
 -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
- ② 입학(편입학·재입학 포함)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,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제10조 (학생정원)

- 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.
- ② 제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20. 다만,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.

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

제11조 (학기 및 수업)

- ① 학기 및 학점인정 기준은 학칙 제8조 및 제24조의1에 따른다.
- ②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과의 학위연계형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, 과정운영시 교육과정은 현장훈련(OJT)과 현장외훈련(Off-JT)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며 운영결과는 정규 학점으로 인정한다.
- ③ 계약학과 수업은 평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 (수업일수)

- ① 계약학과 등의 학년 및 학기는 본 대학 학칙 제7조(학년), 제8조(학기), 제9조(수업일수)에 따른다.

-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(매학기 15주) 이상으로 한다.
- ③ 기타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준한다.

제13조 (책임시수) 교원의 책임시수는 '강의담당시수에 관한 규정' 제3조 제①항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 (강사료 계산)

- 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교원의 강사료는 제13조(책임시수)를 초과하는 책임시수 초과분과 시간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으로 한다.
- ② 출장 여비는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
제15조 (학사관리)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서 규정한 일반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6조 (제적) 본 대학 학칙 제21조에 해당되는 자 및 계약당사자인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를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자는 총장이 제적 처분할 수 있다.

제17조 (운영경비 및 부담)

- ①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대학 교비 회계로 충당한다.
- ② 운영경비는 제1항의 경비 외에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을 포함한다.

제18조 (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)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,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9조(설치·운영기간)

- ① 해당학과 등의 설치·운영기간은 2년(4학기)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계약학과의 학생 중에 본 대학 학칙 및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규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는 본 대학 학칙 제31조(졸업 및 수료)의 서식에 의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
제20조 (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)

- ① 계약학과가 설치·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에 소속시키며,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,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②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학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7.14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모집단위	정원	학위종별	비고
한식조리과	15	호텔조리전문학사	
서양식조리과	15	호텔조리전문학사	
일식조리과	15	호텔조리전문학사	
중식조리과	15	호텔조리전문학사	
베이커리카페과	30	제과제빵전문학사	